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가인프라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국가인프라 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마련 》

■ 송석준 · 손명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31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송석준·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18131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4
가. 총괄 검토	?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5
(2) 제정의 필요성	9
나. 주요 내용 검토	14
(1) 제명,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14
(2)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22
(3) 다른 법률 및 기존 계획체계와의 관계(안 제5조, 제13조 및 제 14조)	25
(4) 국가인프라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 26조)	31
(5)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지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안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43

(6) 인·허가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안 제18조 및 제19조)	48
(7) 투자 우선순위 목록 및 자원 조달·배분(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53
(8) 국가인프라 평가(안 제22조)	58
(9)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및 혁신기술 개발·이용 지원(안 제23조 및 제24조)	61

I. 송석준·손명수의원 대표발의(제2218131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석준·손명수의원 등 36인

나. 발 의 일 : 2026. 4. 6.

다. 회 부 일 : 2026. 4. 9.

2. 제안이유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물별·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인프라, 국가인프라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인프라 관리, 국가인프라 전략,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밝힘(안 제3조).

라.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

고, 국가인프라 전문인력양성, 국가인프라 법·제도 개선, 국가인프라의 수요·공급전망 및 운용의 정합성검토, 성과관리,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경제안보, 국민 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전략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허가 패스트 트랙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위원회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며, 예산 당국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미반영 시 사유를 서면 설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차. 위원회는 3년마다 인프라의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실시함(안 제22조).

카.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고,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 개발추진하고 혁신기술을 이용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예산지원

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타.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에 대해 권고하고, 재원 배분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도록 지원함(안 제25조).

파.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안 제26조).

하. 위원회는 객관적 평가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관은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에 따라 협조할 의무를 가짐(안 제27조).

4.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정안은 국가인프라를 국가경쟁력, 국민안전, 기후위기 대응 및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고, 이를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기획·평가·투자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7장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정안의 기본 구조 】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기본원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인프라위원회 및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제6조	국가인프라위원회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8조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제11조	사무기구 등
제12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장 국가인프라 전략의 수립 및 검토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제13조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검토 및 통보 의무
제4장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및 특례	
제15조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제16조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17조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9조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5장 투자 우선순위 작성 및 예산편성	
제20조	투자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
제21조	예산편성 등과의 관계
제6장 국가인프라의 평가 및 지능화에 관한 사항	
제22조	국가인프라의 평가
제23조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등
제24조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의 개발추진 및 이용 지원
제7장 재원 조달 및 효율적 배분 등	
제25조	재원 조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협력
제26조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
제27조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

먼저, 제정안은 국가의 경제·사회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시설·설비 및 이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정보통신체계를 “국가인프라”로 정의하고,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및 첨단산업 인프라를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안 제2조).

다음으로,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 및 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하 “전략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제13조 및 제14조).

이와 함께, 제정안은 국가·경제안보, 국민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아울러, 위원회는 중복투자 방지와 국가인프라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매년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예산편성, 기

금운용계획 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마지막으로, 제정안은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을 진단하기 위한 국가인프라 평가, 국가인프라 지능화 및 혁신기술 지원, 재원 조달 현황 분석과 재원 배분방안 권고, 부처·지방자치단체·이해관계자 간 분쟁조정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2) 제정의 필요성

국가 차원의 인프라는 교통·물류, 에너지, 수자원·방재, 정보통신 및 첨단산업 시설 등을 포괄하는 국가 경제·사회 활동의 필수 기반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재난의 복합화, 공급망 불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첨단산업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국가인프라의 안정적 구축·관리와 전략적 투자가 국민안전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 주요국도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부처 간 조정과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영국의 재무부(HM Treasury)와 NISTA(Nation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Transformation Authority)는 2025년 6월 경제·주택·사회 인프라를 포괄하는 10년 단위 전략인 「UK Infrastructure: A 10 Year Strategy」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 투자계획의 안정성과 사업 집행체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¹⁾.

1) HM Treasury & National Infrastructure and Service Transformation Authority, UK Infrastructure: A 10 Year Strategy, 19 June 2025.

호주의 Infrastructure Australia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투자와 우선순위에 관하여 정부에 독립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주요 투자제안의 평가와 인프라 정책 우선순위 목록(Infrastructure Priority List)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²⁾.

미국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인프라 사업의 연방 환경검토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명확한 일정과 기관 간 조정체계를 마련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FAST-41(Title 41 of the 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FAST-41의 집행과 관계 연방기관 간 조정을 담당하는 상설 연방 기관으로 미연방 인허가 개선 조정위원회(FPISC: Federal Permitting Improvement Steering Council)을 두고 있음³⁾.

이처럼 주요국이 국가 차원의 인프라 전략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국가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국가인프라는 교통·물류,물관리, 에너지 및 산업입지 등

2) Commonwealth of Australia, Infrastructure Australia Act 2008, ss. 2A, 3, 5B and 5C, Compilation No. 9, compilation date 15 April 2024.

3) Federal Permitting Improvement Steering Council, “FAST-41 Program” 및 “About the Permitting Council”.

분야별 법률과 소관 계획에 따라 조성·관리되고 있어, 개별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시설 간 연계와 범정부 차원의 투자 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⁴⁾.

제정안은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부처별·시설별 인프라 정책의 분절성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둘째,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통하여 중장기 비전,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지역균형 및 기후·안전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것은 인프라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셋째,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시설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인프라 평가, 데이터 표준, 인공지능 기반 관리 및 혁신기술의 개

4) 현행 법체계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계획들이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수립되는 측면이 있음.

발·이용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인프라 시설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데이터와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허가 의제 및 처리 완료 간주 등 상당한 절차상 특례를 부여하고, 국가인프라위원회에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개별법상 기본계획의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 연계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따라서 특례의 필요성·형평성과 위원회 권한 범위의 적정성, 국가인프라가 교통·통신·에너지·첨단산업 등 다수 부처 소관 분야를 포괄하는 점에 비추어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인프라를 국가경쟁력, 기후·재난 대응 등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보고, 범부처 차원의 계획·조정·평가체계를 마련하며,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조문의 명확성과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시는 제정안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과 투자 우선순위 선정

등을 통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가 모든 인프라를 조정·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책무와 의무만 부과하는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하에서는 주요 조문별로 검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검토

(1) 제명, 목적(안 제1조) 및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인프라”란 국가의 경제·사회 기능을 유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리적 시설·설비와 이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및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국가인프라의 범위는 아래의 각 목과 같다. 가. 교통·물류 인프라: 도로·교량·터널, 철도(고속·일반·도시·경전철·트램), 공항, 항만, 복합물류터미널, BRT, 환승 터미널 및 첨단 모빌리티 시설(자율주행전용도로 등) 등 나. 수자원·환경·방재 인프라: 상·하수도 및 처리시설, 댐·보·저류지, 하천·제방·배수 시설, 연안·해안방재, 폐기물·자원순환 시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인프라 등 다. 에너지 인프라: 발전(재생·열병합 등)·송변전·배전망, 해상 풍력, 차세대 원자력(SMR), 가스·수소(도입·배관·충전) 공급망, ESS 및 열배관 시설 등 라. 첨단산업 인프라: 반도체(고도청정·클린룸 등), 첨단 모빌리티(V2X 등), 데이터센터 및 첨단 바이오 인프라 등 2. “국가인프라 사업”이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원활한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에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3.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란 국가인프라 전반에 관하여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투입전략,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의 방향, 데이터

제 정 안

표준, 지역균형 및 기후·안전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전략계획을 말한다.

4.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이란 국가 비전 및 전략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조정과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여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국가인프라 평가”란 인프라의 예산 효율성, 현황, 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 지역균형 및 표준화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6. “국가인프라 등”이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을 포괄한다.

①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제정안은 제명을 「국가인프라기본법」으로 하고,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안 제1조).

② 정의(안 제2조)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국가인프라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등을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1) 국가인프라의 정의(제1호)

제정안은 “국가인프라”를 “국가의 경제·사회 기능 유지와 국가전략 기술의 주권 확보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설비 및 이를 지능적으로 관

리하는 데이터·정보통신체계”로 정의하고, 그 범위로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인프라를 열거하고 있음.

인프라(infrastructure)를 의미하는 “기반시설”은 현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국토계획법」에서 정의⁵⁾하고 있고,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⁶⁾ 등이 있음.

제정안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건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첫째, 제정안은 국가인프라의 범위에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지방도·시도·군도·구도, 지방하천·소하천, 지방상수도 및 공공하수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청 또는 관리주체가 되는 바⁷⁾, 이와 같은 지역 기반시설이 “국가인프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둘째, 제정안은 국가인프라의 범위를 법률에서 매우 상세히 열거하면서 트램, BRT, SMR, ESS, CCS, V2X 등 기술명 또는 영문 약어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은 BRT의 경우 “간선급행버스체계⁸⁾”, 트램의 경우 “노면전차⁹⁾”, SMR의 경우 “소형모듈원자로¹⁰⁾”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법률 간 유기적인 연결을 고려하여 용어 명칭을 통일하는 것이

7) 「도로법」 제23조, 「하천법」 제7조 및 제8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 「수도법」 제3조제8호 및 제17조, 「하수도법」 제18조 등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9)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路面電車)·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10)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6. 9. 11. 시행 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모듈원자로”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 중 원자로 노형과 관계없이 모듈당 발전설비용량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이거나 열출력이 1천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성을 갖춘 것을 말한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또한 ESS¹¹⁾¹²⁾나 V2X¹³⁾와 같이 기술적인 용어를 법률에 직접 열거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술의 종류는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인프라”는 그 명칭과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적 중요성, 광역적 파급효과, 대체곤란성 또는 국가안보·재난 대응상의 필요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정안은 개별 시설이 국가인프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종류의 시설 중 어떠한 시설이 국가인프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인프라의 핵심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해당 요건에 따라 국가인프라를 지정하는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1) 에너지 저장 체계(ESS; Energy Storage System)로 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함.

12)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7)」 [소방청고시 제2026-25호]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저장장치”란 생산된 전기를 전력 계통에 저장했다가 전기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배터리(이차전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발전·송배전·일반 건축물에서 목적에 따라 단계별 저장이 가능한 장치를 말한다

13) Vehicle to Everything: 차량·차량(V2V) 차량·도로(V2I) 차량·사람(V2P) 등이 상호통신해 ▲급정거 등 위험상황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등 돌발 상황 등을 미리 알려주는 기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프라”의 정의에 포함된 “국가전략기술의 주권”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이 현행 법률상 별도로 정의·관리되는 용어이므로¹⁴⁾, 제정안의 “국가전략기술의 주권”이라는 표현은 특정 법정 기술 분야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기술 주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국가인프라 사업 및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정의(제2호, 제4호)

안 제2조제2호는 “국가인프라 사업”을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인프라 사업”과 관련하여 안 제2조제2호는 “제3조에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는 국가인프라의 기본원칙에 관한 조항으로서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국가인프라 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은 안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지정되는 사

1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10대 분야)

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국가인프라 사업”은 별도의 선정 기준이나 지정 절차가 없는바, 어떤 사업이 “국가인프라 사업”에 해당하고,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해당하는지 양자의 관계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을 국가인프라 사업 중 안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양자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타

안 제2조제6호는 국가인프라, 국가인프라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 계획,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및 국가인프라 평가를 포괄하여 “국가인프라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시설·사업·계획·평가 등 성격이 다른 개념을 “국가인프라 등”이라는 하나의 약칭으로 묶을 경우 각 조문의 적용대상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약칭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문마다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약칭의 범위를 유사한 개념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인프라의 범위를 전통적인 SOC뿐만 아니라, 에너지망, 첨단산업 인프라까지 포함하는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 대하여 최

근 인프라 정책 여건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나, 기존 법률상 용어체계와의 정합성 및 국가인프라 범위의 명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기본원칙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①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② 국가인프라 관리는 인프라의 전 생애주기에서 성능·수명·비용·위험 등을 통합 관리하여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관리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프라 전략은 제1항의 국가인프라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인프라의 안전, 기후·재난 등 복합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적응 등 생태·환경 보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은 인프라의 기획·투자·운영 전 과정에서 지역 간 접근성과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인프라 취약지역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익 배분의 형평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인프라에 대한 평가는 인프라 계획·변경, 예산수립, 성과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정보공개를 보장하고, 국가인프라 사업 결정의 근거와 절차에 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인프라 정책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인프라 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도록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의 인프라 정책과 조화를 이루도록 관할 구역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국가인프라의 관리·평가·사업 수행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이는 국가인프라의 안전 및 회복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지역 간 접근성과 서비스 격차 완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정보공개 보장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책무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인프라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3조제3항은 “국가인프라 전략”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전략”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등 제정안의 다른 규정과 정합적인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관할 구역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관할구역을 가지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책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관리 계획”을 수

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관리계획의 수립 주체, 수립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그 법적 성격과 수립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국토교통부는 국가인프라 정책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계획·투자·운영과도 밀접히 연계되므로 각 주체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이외의 인프라 관리주체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 관리 주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¹⁵⁾.

15)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다른 법률 및 기존 계획체계와의 관계(안 제5조, 제13조 및 제14조)

제 정 안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국가인프라 평가 및 표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인프라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원칙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인프라의 전략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 법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대체하지 아니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하 “전략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략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략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인프라 전략의 중장기 비전, 전략의 기본방향 2. 국가인프라의 체계적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속가능한 국가인프라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기술주권 확보, 지속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인프라의 통합적 수요·공급 전망 및 부처 간 국가인프라 운용의 정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5. 전략 기본계획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및 이에 따른 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 정 안

7.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8. 국가인프라의 지역균형 및 기후·안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 국가인프라의 평가 및 지능화에 관한 사항
 10. 국가인프라 사업운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에 관한 사항
 11.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정보공개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과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및 통보 의무)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변경이 전략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및 시행하도록 하고(안 제13조),

국가인프라 전략이 국토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 평가 및 표준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

아울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

제정안은 국가인프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하 “전략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략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체계에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가인프라를 체계적·정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4조제2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변경이 전략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 대상이 되는 “소관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범위와 “전략 기본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유사 입법례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¹⁶⁾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 통보 대상이 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와 통보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제정안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5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령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법령안의 통보 시기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송부하는 때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전략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프라 등”의 정의에는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어¹⁷⁾, 순환적인 용어가 사용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 제2장의 제목은 “국가인프라위원회 및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장에 규정되어 있고, 제2장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문 체계와 장 제목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13조제1항은 위원회가 전략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변경 및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은 계획의 내용 또는 여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정기적 의무처럼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안 제5조제3항 전단은 “이 법에 따른 국가인프라의 전략”이

17) 「국가인프라기본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이란 국가인프라 전반에 관하여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투입전략,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의 방향, 데이터 표준, 지역균형 및 기후·안전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 전략계획을 말한다.

6. “국가인프라 등”이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을 포괄한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인프라의 전략”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조문의 취지상 “전략 기본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어를 “전략 기본계획”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교통·수자원·에너지·첨단산업 등 분야별 계획을 국가전략과 연계하고, 장기 투자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 수립은 필요하나,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전략 기본계획과 상호 연계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국가인프라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6조)

제 정 안
제6조(국가인프라위원회) ①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이견 조정, 실행력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성장 수석비서관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사항은 위원장 간 협의로 결정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 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 정 안

제8조(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되거나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에 의한 인프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4. 제15조에 따른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및 결과 공개
5. 국가인프라 평가 및 결과 공개
6. 국가인프라 관련 표준에 관한 사항 등
7. 국가인프라 정책과 관련된 부처 간, 지자체 간,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정 및 자문
8.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9.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현황 분석, 중장기 재원 소요 추계, 재원 확보 방안 및 효율적 재원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10. 국가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원은 관계 분야의 안전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정·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연구 및 자문, 분과위원회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제 정 안

둘 수 있다.

- ⑤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기구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의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위원회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무처의 조직,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회 및 사무처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문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략 기본계획 수립 및 정합성 검토의 기술적 지원
2. 제22조에 따른 국가인프라 평가 및 보고서 발간 지원
3.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 관리 및 지능화 기술의 현장 적용 지원

- ③ 정부는 전문지원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인프라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 간, 지자체 간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제 정 안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인프라 사업의 노선, 입지 및 재원 분담에 관한 갈등
2. 부처 간 인프라 계획의 상충 및 인허가 의제 관련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④ 그 밖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 절차 및 효력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권한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 우선 순위 및 전략사업의 지정·평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이는 국가인프라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가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정책의 실행력 확보 등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산된 국가인프라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자문이나 부처 간

협의·조정에 그치지 않고, ①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②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③ 범부처 투자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 ④ 국가인프라 평가의 실시, ⑤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의 심의와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집행기능도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무처와 전문지원기관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은 위원회는 일반적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넘어, 국가인프라 정책의 수립·결정뿐만 아니라 시행 및 성과관리까지 담당하는 범정부 국가인프라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별도의 위원회와 사무처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서도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정책의 통할·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¹⁸⁾, 국가인프라 정책의

18)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존 조정체계를 통하여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와 상설 사무처를 설치하고 정무직 사무처장을 신설하는 것이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은 위원회를 “독립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기구”로 규정하면서도, 전략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프라 평가 및 플랫폼 구축·운영 등의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별도의 사무처까지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관계 정책을 조정·점검하며 별도의 기획단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위원회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¹⁹⁾.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은 부문별·연도

19)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와 집행기관 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위원회가 전략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이를 스스로 심의·의결·시행하고, 국가인프라 평가와 플랫폼 구축·운영까지 담당하도록 하여,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집행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음²⁰⁾.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정책의 기본방향 심의 및 부처 간 조정을 담당하되, 구체적인 계획안의 작성과 사업의 시행, 평가 등 집행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는 등 역할을 구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위원 구성에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성장 수석비서관”

20)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생략)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략)

제8조(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략)

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제와 명칭은 정부 조직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위원회 민간위원은 전략사업 지정, 투자 우선순위 및 인·허가 특례 등 이해관계가 큰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²¹⁾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전문위원과 사무처 직원 등도 직무상 비밀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²²⁾를 참고하여 이들을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섯째,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프라 관련 개별법의 의미와 검토의 효력도 불분명할뿐더러,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적정성을 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은 비교적 폭넓은 조정

2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현행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기능과의 관계, 계획 간 정합성 확보의 필요성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 수립 권한에 미치는 영향 및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권한의 부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인프라는 다양한 부처의 소관업무가 결합된 영역이므로,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에 타당하며, 분과위원회, 사무기구 및 전문지원기관을 두는 것도한 전문성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입장임.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과 관할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인프라에 관한 전략 기본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인프라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국가인프라위원회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부위원회 정비 기조를 고려하여

별도 위원회 신설에 앞서 기존 위원회와의 기능 조정·통폐합 등 수행 체계 효율화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사무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서 정부조직의 합리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²³⁾, 개별 법률에 정부조직에 관한 사항인 사무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원회의 기능 중 “국가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호)에 대하여, 과학기술혁신 및 국가연구개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체계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²⁴⁾, 국가인프라위원회가 이를 별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 과학기술 정책 조정체계와 중복되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24) 「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②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정책 및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지방자치단체·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려는 것임(안 제26조).

국가인프라 정책 및 사업은 노선·입지·재원 분담 등을 둘러싸고 부처·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별도의 조정기구를 통하여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인프라 사업의 노선·입지·재원 분담, 부처 간 계획의 상충 및 인·허가 의제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면서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조정 절차 및 효력 등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분쟁조정 결과가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입법례와 같이²⁵⁾ 조정의 성립 요건 및 조

25) 「하천법」

제56조(하천수 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정의 효력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지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안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제 정 안
제15조(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지정) 위원회는 국가·경제 안보, 국민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략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위원회에 의해서 지정된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국가인프라의 안전 및 회복력의 긴급한 확보, 기술주권 및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의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15조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국가인프라의 안전 및 회복력의 긴급한 확보, 기술주권 및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가·경제 안보, 국민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우선 선정 및 면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6조).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유사 입법례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²⁶⁾가 있음.

2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그 밖에 전략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업 목적,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은 국가·경제 안보, 국민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인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일정한 경우 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적 재정통제 수단이고, 현행 「국가재정법」도 국가정책적으로 긴급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별도로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독자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두는 것이 재정통제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경제 안보,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사업
2.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3.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취지와 현행 국가재정 운용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인·허가 등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부여하면서도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핵심 지정 요건과 지정·변경·해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안 제16조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전체의 재정운용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상 국가정책적으로 긴급한 사업은 국무회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으므로²⁷⁾, 개별 법률에 별도의 우선 선정·면제 규정을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안 제17조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상 특정 분야 사업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현행 법령²⁸⁾에

2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따라서도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히, 안 제16조제3항은 기획예산처장관뿐만 아니라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주무부처 장관에게도 독자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는 없는 내용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및 면제 권한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경제 안보, 국민안전, 공급망 안정 및 미래 성장에 긴급하고 범부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예산의 편성) ③ 기관장은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적·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6) 인·허가 의제 및 신속처리 특례(안 제18조 및 제19조)

제 정 안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제15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를 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원활한 조성·운영을 위한 제18조에 따른 인·허가 등이 지연되어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당 주무부처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받은 주무부처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인·허가권자가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는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 계획을 제출한 인·허가권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 기간 내에 인·허가 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제 정 안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신속 처리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인·허가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인·허가 등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또한, 인·허가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처리계획 또는 처리결과를 회신·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속처리 요청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9조).

제정안은 국가·경제 안보, 국민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지정되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경우 사업의 적기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허가 등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둬으로써 중요 국가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에 따른 특례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인·허가 의제 관련 입법례는 통상 의제되는 인·허가의 종류와 관계 법률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및 협의 기간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²⁹⁾.

그런데 제정안은 의제 대상을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떤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의제 대상 법률과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생략)

②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승인권자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9조제5항은 인·허가권자가 법정 기간 내에 처리계획을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이와 유사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³⁰⁾.

다만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신속처리 대상이 되는 인·허가 등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적용 대상 인·허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범위도 광범위하므로 특례의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3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인가·허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또는 승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인가·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사업 협의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생략)

⑤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처리기간 내에 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생략)

인·허가 의제는 개별 인·허가권자의 심사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인바, 소관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인·허가 등의 처리 완료 간주 규정은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나, 환경·안전 및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실제적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 등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인·허가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법적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간주 대상이 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9조는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의 “시행자”가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의미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전략사업의 지연을 줄이기 위하여 인허가 의제 특례가 필요하나, 인허가 의제를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투자 우선순위 목록 및 재원 조달·배분(안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제 정 안
제20조(투자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 ① 위원회는 한정된 국가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신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매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인프라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에 우선순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우선순위 목록을 제3조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국가인프라 사업을 종합 평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우선순위 목록의 작성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예산편성 등과의 관계)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제20조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20조에 따라 작성된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지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유를 받은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밝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검토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5조(재원 조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협력) ① 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정부가 인프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원조달 및 배분방안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재원 배분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제 정 안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제도화하도록 지원한다. ④ 그 밖의 재원 조달 및 효율적 배분을 위한 협력, 지원, 규제완화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매년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가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우선순위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0조).

아울러,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예산편성, 기금운용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1조).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재원 조달 현황과 중장기 재원 소요를 분석하여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에 제시하고, 생애주기 비용의 최소화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 조달·배분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5조).

이와 같이 국가인프라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중장기 재원 소요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부처별·시설별로 분산된 투자계획의 중복을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급성과 효과가 높은 사업에 배분하는 한편, 중장기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은 한정된 재원을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국가재정 운용의 핵심 과정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예산요구와 기획예산처장관의 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므로, 각 기관의 재정여건과 정책적·경영상 판단이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84조 제1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 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³¹⁾, 이는 개별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3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안과 차이가 있음.

그런데 제정안은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고 위원회가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각 기관의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여 법령의 제·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³²⁾, 안 제25조는 위원회가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제도화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제도화 업무까지 지원하도록 할 경우 심의·조정과 집행 기능이 혼재될 수 있는바,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원 조달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

32)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권고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및 후속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5조제2항은 “생애주기 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은 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³³⁾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위원회 관련 유사입법례를 고려할 때 미반영 사유 제출이나 위원회의 재검토 요청 등의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시는 국가인프라위원회의 투자 우선순위 검토 대상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인프라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8) 국가인프라 평가(안 제2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가인프라 평가”란 인프라의 예산 효율성, 현황, 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 지역균형 및 표준화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국가인프라의 평가) ①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 평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대상 시설의 특성, 중요도, 평가 목적에 따라 전수조사, 표본조사 또는 전문가 인식도 조사 방식 등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한토목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국가인프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보고서의 구성·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위원회가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국가인프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경우 시설의 노후화와 성능 저하를 조기에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인프라의 유지·보수 및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인프라의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국가인프라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그 결과를 전략 기본계획이나 투자 우선순위 목록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환류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성능평가 결과를 후속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³⁴⁾, 제정안도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를 전략 기본계획이나 투자 우선순위 목록에 활용하는 등 환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평가 결과를 전략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3년인 평가 주기와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제정안 제2조제5호는 국가인프라 평가의 범위에 예산 효율성, 성과, 투명성, 지속가능성, 지역균형 및 표준화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안 제22조제1항은 평가 목적을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 진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 간 평가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34)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2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안 제22조에 핵심 평가 항목을 직접 규정하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한편, 제2조의 정의 규정과의 정합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2조제3항은 대한토목학회 등 민간 전문단체와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 민간단체의 명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 등 일반적인 표현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넷째, 위원회가 국가인프라 평가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의결기관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평가를 수행하고 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가인프라의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전략 기본계획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하기 위한 주기적인 평가는 필요하나, 특정 민간단체를 직접 명시할 경우 평가단 구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9)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및 혁신기술 개발·이용 지원(안 제23조 및 제24조)

제 정 안
제23조(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등) ① 국가는 국가인프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전 과정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능화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을 심의하며, 민간의 창의적 기술이 인프라 관리에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의 개발추진 및 이용 지원) ①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이란 국가인프라의 지능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다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혁신기술을 말하며, 정부는 국가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인프라 혁신기술 개발의 중복을 방지하고 부처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도입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 국가인프라 현장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인프라 관리주체에게 예산 지원,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의 선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국가인프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제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가 국가인프라 데이터 표준을 심의하고 민간기술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또한 정부가 다부처 공동의 국가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가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기술 도입 정책을 심의·조정하며, 혁신기술을 현장에 우선 적용하는 관리주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이는 국가인프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통합·표준화와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기술을 인프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처별 연구개발사업과 기술 도입 정책의 중복을 방지하고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3조제2항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수반하는 집행업무인바, 위원회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³⁵⁾.

3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의 연계·융합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데이터의 제출 등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하면서 수집·관리하는 데이터에 「개인

둘째, “국가인프라 지능화” 및 “지능화 기술”의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데이터 통합·인공지능 활용·플랫폼 구축 및 혁신기술 개발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4조는 “관리주체”를 언급하고 있으나, 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관리주체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³⁶⁾, 제정안도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과정의 데이터 연계 및 인공지능 기반의 선제적 관리 지원은 국가인프라의 안정성·운영효율 향상 측면에서 타당하나, 위원회를 집행주체로 규정하는 것은 기능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 제24조제2항에 대하여, 「과학기술기
본법」 제12조의2³⁷⁾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³⁸⁾에 따라 국

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3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7) 「과학기술기
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방법

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므로, 기존 법률체계와 충돌할 수 있어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9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생략)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3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능

마. 매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